

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신홍식 의원 발의】



2025. 02. 17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472호로 2025년 2월 3일 신홍식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영등포구가 주최·주관하거나 출연·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공개 대상, 사항, 의무,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7조)

라.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5.2.4.~2025.2.9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

- 지역행사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역문화 활성화에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성장하였고, 전국 지역행사·축제의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84개에서 2024년 1,170개로 빠르게 증가¹⁾하였음.
- 그러나 각종 행사개최를 위해 지출되는 예산에 대한 전시성, 낭비성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에 따라 모든 행사·축제의 원가 회계 정보를 우리구(區)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.
-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구민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찾아봐야 하는 수고로움이 드는 소극적 공개이나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행사 홍보물에 예산을 기재하여 별도로 찾아보는 수고로움 없이 구민의 접근성을 강화한 적극적 공개의 내용을 담고 있음.

○ 법적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기관의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- 그리고 동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는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공개의 구체적 범위, 주기,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

1) 출처: '2024년 지역축제 현황 및 성과분석에 따른 성과관리 제도개선 방향성 제언'(2024.8.21. 나라살림보고서 제400호)

알리고,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함.

○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

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행사”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, 문화제, 예술제, 체육대회, 경연대회, 공연을 말한다. 2. “홍보물”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, 홍보 책자, 현수막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.

- 안 제2조에서 행사와 홍보물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.

제 정 안
<p>제4조(공개 대상) 행사 예산 공개는 소요되는 예산이 총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.</p>

- 안 제4조에서 행사 예산 공개 대상은 소요예산이 총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
- 이와 관련한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전국에서 17개(서울시 1개) 지자체에서 행사 예산 공개 조례를 두고 있고 과반수 이상의 지자체에서 2)3천만원 이상의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은

2) 【공개 기준 금액 현황】

금 액	지자체 수(개)	지자체 명
계	17	
1천만원 이상	1	인천 계양구
2천만원 이상	2	보령시, 통영시
3천만원 이상	10	서울 서대문구, 인천 동구, 인천 남동구, 안동시, 천안시, 원주시, 광주 서구, 오산시, 원주시, 부산 연제구
5천만원 이상	4	인천 서구, 대전 유성구, 화성시, 군포시

타 자치단체에 비해 높다고 할 수는 없으며, 지역적 특성, 행사 빈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기준으로 여겨짐.

제 정 안
<p>제5조(공개 사항)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.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,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<p>제6조(공개 의무)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. 다만,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 예산을 출연·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.</p>

-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을 공개 내용으로 하며, 국·시비가 포함된 경우 재원별 금액과 비율을 명시하도록 규정함.

제 정 안
<p>제7조(공개 방법)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②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.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: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.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: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전면 우측 하단에 예산 사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우측 하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.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.

- 안 제7조에서는 행사 예산을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 위치, 크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의 경우에는 확인이 용이한 별도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을 명기함.

제 정 안

제8조(결과의 반영)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, 행사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고려할 수 있다.

- 안 제8조에서는 행사 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연도 행사 예산 심의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○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예산 3천만원 이상의 대규모 행사에 대해 전체 소요경비와 재원을 홍보물에 기재하여 사전에 공개하는 것으로 재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,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에 의거 우리구 홈페이지에 이미 게시되고 있던 행사·축제 원가회계정보는 올해 집행한 예산을 그 다음 해에 일괄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정보 공개에 시차가 발생하는 아쉬움이 있으나,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행사 홍보 기간 중에 행사 예산을 공개하게 됨으로써 정보 공개의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의 보완·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지역경제 파급 효과, 고용 유발 효과 등 행사 축제의 효과는 수치화 할 수 없음에도 행사축제 예산이 공개됨으로써 단순 비교 대상이 되어 행사 운영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임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제26조(주민에 대한 정보공개)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, 집행기관의 조직,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(이하 “지방자치정보”라 한다)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제3조(정보공개 원칙)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
제7조(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)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, 주기,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,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
1.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
2.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(工事)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
3.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
4.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